

Vol.1575



법원공보

2019. 9. 1. SUN

법원행정처

● 목 차

규칙	1137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신법령 목록	1141	
인사	1144	

● 규칙

◎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대법원규칙 제2857호 2019. 8. 19. 공포)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제2조(기능)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아래 각 호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법원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3.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다만, 법관이 아닌 위원은 판사의 보직인사안 수립에 관한 사항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대법원의 기관과 각급 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국법원장회의가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2인
2.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3인
3.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관이 아닌 사람 4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④ 대법원장을 제외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관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⑤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 ⑥ 법관인 위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⑦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⑧ 위원은 상근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장과 간사) ①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표하며,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간사를 둔다.
- ④ 간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 또는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 ⑤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와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④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의 안건과 의결) ① 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한다.

-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행정 담당자로 하여금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설명,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의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결을 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기록한 사법행정자문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한다.

② 의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회부한 안건을 연구검토한다. 다만,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개최 전이라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연구검토할 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분과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④ 분과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⑥ 대법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신청을 받거나 대법원의 기관, 각급 법원 또는 외부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⑦ 제3조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와 안건 등을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그 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지체 없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담당 분과에 관한 사법행정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안건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⑥ 제5조제4항, 제5항과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서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법관인사분과위원회는 판사의 보직에 관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또는 의장이 회부하는 사항을 연구검토한다.

③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1.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1인

2.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4인 중 2인
3.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4인 중 2인
- ④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꺾워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 ⑤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⑥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된다.
- ⑦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⑧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운영지원단) ①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을 둘 수 있다.

- ② 운영지원단장과 운영지원단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조사연구 의뢰) ①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나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제출요청 등)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다음에도 같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한 날이 속한 분기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법령 목록 (2019. 8. 1. ~ 8. 15.)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6435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9. 8. 12	19564	4
【조약】				
조약제2423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간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의 대한민국 내 설립에 관한 교환각서	2019. 8. 9	19563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016호	적극행정 운영규정	2019. 8. 6	19560	5
대통령령제30017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30018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	13
대통령령제30019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	"	"	18
대통령령제30020호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	"	21
대통령령제30021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	"	25
대통령령제30022호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30023호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	"	30
대통령령제30024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4
대통령령제30025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	"	39
대통령령제30026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40
대통령령제30027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53
대통령령제30028호	관보규정 전부개정령	"	"	58
대통령령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0
대통령령제3003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4

대통령령제3003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8. 6	19560	67
대통령령제30032호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2
대통령령제30033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3
대통령령제3003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4
대통령령제30035호	감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8. 13	19565	4
대통령령제30036호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	"	6
대통령령제30037호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	"	7
대통령령제3003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30039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3004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30041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3004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3004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30044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3004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	"	16

【부령】

외교부령제69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2019. 8. 1	19557	4
행정안전부령제131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
문화체육관광부령제36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기획재정부령제744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8. 2	19558	4
문화체육관광부령제366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9
여성가족부령제142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7
교육부령제185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8. 6	19560	79
국방부령제988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0
국방부령제989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6
국토교통부령제641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90
국토교통부령제642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9. 8. 7	19561	3

국토교통부령제64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8. 7	19561	4
국토교통부령제644호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	2019. 8. 8	19562	3
산업통상자원부령제34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8. 12	19564	9
보건복지부령제66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
보건복지부령제664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
보건복지부령제665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2
법무부령제95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8. 13	19565	18
국방부령제99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
행정안전부령제13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
행정안전부령제13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2
국토교통부령제64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4
중소벤처기업부령제20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5
해양수산부령제363호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8. 14	19566	4
해양수산부령제36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인사

인사발령 법 제123호

2019. 7. 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	---------	----	------

1. 징계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송승환

법관징계법 제26조 제1항,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2019. 7. 8.자) 끝.

인사발령 법 제125호

2019. 7. 3.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	---------	----	------

1. 지정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예림

근무시간 단축근무 해제를 명함

(2019. 7. 22.자) 끝.

인사발령 법 제127호

2019. 7. 3.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최지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7. 30.부터 2020. 7. 29.까지 휴직을 명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오현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7. 15.부터 2020. 2. 23.까지 휴직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29호

2019. 7. 9.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이아영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에 포함
			(2019. 7. 13.자) 끝.

인사발령 법 제133호

2019. 7. 18.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퇴직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김태갑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정년퇴직)
			(2019. 7. 3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34호

2019. 7. 18.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복직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민경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9. 7. 25.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7. 25.부터 2020. 1. 20.까지 휴직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35호

2019. 7. 19.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사 명 령
1. 교육파견(학위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새롬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김재현	2019. 8. 19.부터 2020. 8. 18.까지 영국 캠브리지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고유강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미국 코넬테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정아	2019. 8. 19.부터 2020. 8. 18.까지 영국 런던(LSE)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 교육파견 및 교육파견기간 연장(연구과정)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진영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독일 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중흠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신정일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중국 화동정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최선재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미국 UC어바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최호진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유병호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이우용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홍관	2019. 8. 19.부터 2020. 8. 18.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송재윤	2019. 8. 19.부터 2020. 8. 18.까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위수현	2019. 8. 19.부터 2020. 8. 18.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임택준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스위스 취리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장성욱	2019. 8. 19.부터 2020. 8. 18.까지 프랑스 파리제2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황미정	2019. 8. 19.부터 2020. 8. 18.까지 미국 포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효연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백소영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이주연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오스트리아 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이혜린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조장환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미국 듀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환영	2019. 8. 19.부터 2020. 8. 18.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 교육과건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신영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미국 에모리대학 교육과건을 명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한동석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과건을 명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유형웅	2019. 8. 19.부터 2020. 8. 18.까지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육과건을 명함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이보경	2019. 8. 19.부터 2020. 8. 18.까지 미국 UCLA대학 교육과건을 명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이영제	2019. 8. 19.부터 2020. 8. 18.까지 호주 멜버른대학 교육과건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손태원	2019. 8. 19.부터 2020. 8. 18.까지 프랑스 파리제10대학 교육과건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경록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과건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정윤주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육과건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전선주	2019. 8. 19.부터 2020. 8. 18.까지 미국 워싱턴(세인트루이스)대학 교육과건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윤준석	2019. 8. 19.부터 2020. 8. 18.까지 미국 미시간대학 교육과건을 명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용규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과건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백지예	2019. 8. 10.부터 2020. 2. 9.까지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육과건기간을 연장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3.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건	2019. 8. 9.부터 2020. 6. 8.까지 미국 UC어바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심재광	2019. 8. 9.부터 2020. 6. 8.까지 미국 페퍼다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이동희	2019. 8. 9.부터 2020. 6. 8.까지 미국 예시바(카도조)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전상범	2019. 8. 19.부터 2020. 6. 18.까지 미국 샌디에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현정	2019. 8. 9.부터 2020. 6. 8.까지 미국 콜든게이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재희	2019. 8. 19.부터 2020. 6. 18.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이현오	2019. 8. 19.부터 2020. 6. 18.까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최지경	2019. 8. 9.부터 2020. 6. 8.까지 미국 퍼시픽맥조지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인천가정법원 판사	이효선	2019. 8. 19.부터 2020. 6. 18.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채성호	2019. 8. 19.부터 2020. 6. 18.까지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37호

2019. 7. 19.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복직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채성호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포함
(2019. 8. 19.자) 끝.			

인사발령 법 제139호

2019. 7. 24.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보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이광만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19. 8. 14.자)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이영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19. 8. 10.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정성균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나경선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19. 8. 25.자)
다. 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양승우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2019. 8. 10.자)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한지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경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진영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에 포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안정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에 포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를 겸임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문기선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소망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에 포함 (2019. 8. 10.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황인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에 포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재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에 포함 (2019. 8. 20.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김홍섭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25.자)

2.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이유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24.부터 2020. 2.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2019. 8. 24.부터 2020. 2.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소민	2019. 8. 24.부터 2020. 2.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은경	"
수원지방법원 판사	유성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2019. 8. 24.부터 2020. 2.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3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3. 지정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공두현	근무시간 단축근무 해제를 명함 (2019. 8. 23.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진성	근무시간 단축근무 해제를 명함. (2019. 8. 24.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24.부터 2020. 2.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3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4.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장진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12.부터 2020. 3. 6.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이상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25.부터 2020. 8. 23.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강길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1.부터 2020. 7. 31.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서범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25.부터 2020. 1. 13.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설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10.부터 2020. 6. 27.까지 휴직을 명함
	"	안지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12.부터 2020. 2. 11.까지 휴직을 명함
	"	이미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12.부터 2019. 9. 11.까지 휴직을 명함
	"	이진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12.부터 2020. 8. 11.까지 휴직을 명함
	"	조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10.부터 2020. 8. 9.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동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12.부터 2020. 7. 24.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이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10.부터 2020. 2. 16.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노미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25.부터 2020. 2. 14.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효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5.부터 2020. 1. 19.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김정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25.부터 2020. 2. 23.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하효진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12.부터 2020. 8. 11.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경정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10.부터 2019. 9. 9.까지 휴직을 명함
	"	윤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10.부터 2020. 7. 31.까지 휴직을 명함
	"	정왕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5.부터 2020. 8. 4.까지 휴직을 명함
	"	정지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24.부터 2020. 2. 24.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선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1.부터 2020. 6. 30.까지 휴직을 명함
	"	김태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10.부터 2019. 9. 9.까지 휴직을 명함
	"	이화송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8.부터 2020. 8. 7.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한나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20.부터 2020.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승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20.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신동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19.부터 2020. 8. 18.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이정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10.부터 2020. 2. 9.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주은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1.부터 2019. 11. 30.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구창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이고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12.부터 2019. 9. 11.까지 휴직을 명함
	"	정현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10.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여인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19.부터 2020. 2. 18.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광주지방법원 판사	박주영(朴柱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6.부터 2020. 8. 5.까지 휴직을 명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김기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12.부터 2020. 2. 11.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희숙	2019. 8. 24.부터 2020. 2. 24.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정지선	2019. 8. 24.부터 2020.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신영	2019. 8. 1.부터 2020.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혜림	2019. 8. 13.부터 2020. 8. 1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문주희	2019. 8. 10.부터 2020. 2. 14.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홍다선	2019. 8. 10.부터 2020. 2. 19.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선균	2019. 8. 10.부터 2019. 8. 3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서우	2019. 8. 25.부터 2020. 2. 24.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도우람	2019. 8. 21.부터 2020. 8. 20.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5.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순한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19. 8. 24.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지정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19. 8. 20.자)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흥성지원 부장판사	정옥도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흥성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19. 8. 17.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배동한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19. 8. 20.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서정원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19. 8. 24.자)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혜정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17.자)
다. 고등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차지원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13.자)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수양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3.자)
	"	배은실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25.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25.부터 2020. 2.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진희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31.자)
	"	장원지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22.자)
	"	현영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8. 22.부터 2020. 2.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31.자)
	"	김용태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17.자)
	"	현영수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10.자)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봉락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20.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강 건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20.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고소영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24.자)
	"	박세황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9.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민우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3.자)
	"	조연수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포함 (2019. 8. 24.자)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지원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13.자)
	"	오승이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1.자)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박혜정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9.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성구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21.자)
	"	이경선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1.자)
	"	이종문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20.자)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정민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포함 (2019. 8. 25.자)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현진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10.자)
	울산지방법원 판사	장성신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2.자)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도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10.자)
	"	강진명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9. 8. 14.자)
6. 겸임해임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고유강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2019. 8. 9.자)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7. 파견 및 파견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감사원)	황중연	2019. 8. 16.부터 2020. 8. 15.까지 감사원 파견근무기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윤정	2019. 8. 20.부터 2020. 8. 19.까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상설사무국 파견근무를 명함
8. 복귀			
가. 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상설사무국)	강동원	복귀를 명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에 포함
(2019. 8. 20.자) 끝.			

인사발령 법 제140호

2019. 7. 29.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보			
가. 검사장			
	대법원 (법무부 법무연수원 기획부 부장)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포함
(2019. 7. 31.자) 끝.			

